1894-1895년 품계제도개편의 근대적성격

양 영 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고 발전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새것에 의하여 교체되는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전집》제14권 154폐지)

봉건제도가 분해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는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이다.

18~19세기 전반기에 걸쳐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라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1894년에 들어서면서 혁신관료들은 봉건제도의 위기와 일제에 의한 나라의 식민지화의 위험이 심각해지고 갑오농민전쟁을 일으킨 인민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여나서게 된력사적화경에 맞게 봉건관제를 근대적으로 개편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 글에서는 1894-1895년 품계제도개편사업이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진행된 근대적개편이였다는데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운동은 일시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자기의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혁신관료들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이전시기의 통치기구들을 대담하게 허물고 근대적성격에 맞게 정치기구들을 새롭게 개편하는것과 함께 관리들의 품계제도도 개편하였다.

1894-1895년 품계제도개편이 근대적성격을 띠는것은 무엇보다먼저 15세기 특권관료들의 지위를 보장해주던 품계의 종류와 관료군편성원칙이 관리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간소화되고 단일화된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품계는 봉건사회에서 계급신분관계의 구체적표현이며 지배계급내 부에서의 계층적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벼슬등급이였다.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5세기에 지배계급내부에 여러 신분충을 망라하는 품계제도를 새로 제정하고 그 종류를 고려시기에 비해 거의 3배나 늘이였다.

봉건적중앙집권력이 가장 째여있던 15세기에는 품계의 종류가 소수 특권신분층의 정 권독점을 영구화하는데 맞게 세워져있었다.

례하면 량반신분층들은 정직계를, 잡직신분층들은 잡직계를, 토관출신들은 토관계를 받았다. 즉 매 신분에 따라 해당 품계의 종류가 구분되여있어 그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 하였다.

15세기 품계의 종류들에서도 제일 중요시된것은 정직동반계였다. 정직동반계에는 량반신분층과 중인신분층들이 망라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품계들보다 그 지위가 높았다.

정직동반계에서도 중인신분충들은 량반신분충들과는 달리 벼슬의 한품서용제로 하여 맨 웃자리가 당하관(정3품 하)밖에 오를수 없게 되여있었다. 이밖에도 잡직계(동, 서반), 토관계(동, 서반)가 있었지만은 이들은 신분적차이로 하여 정직계를 받을수 없도록 법적 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적제한은 신분제도가 째여진 15세기에만 가능한것이였다. 이리하여 15세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특권관료들의 권한과 지위가 매우 높았다.

품계제도는 그 이후 점차 문란되였으나 기본적으로 19세기 중엽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894년에 들어서면서 혁신관료들은 통치기구를 개편하면서 이전시기부터 내려오던 품계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편하였다.

당시 혁신관료들은 이전시기부터 존재하던 낡고 뒤떨어진 통치기구들에 대한 개편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교정청과 군국기무처를 내오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나갔다.

이러한 통치기구의 개편은 봉건적품계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편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혁신관료들은 량반신분층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품계인 정직계를 따로 설정하고 여기에 다른 신분층들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던 종전의 규정들을 없애고 하나의 품계에 의한 새로운 품계제도를 형성하였다.

1894년 6월 25일 김홍집내각의 출현은 새로운 통치기구와 품계제도를 개편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혁신관료들은 1894년 6월 25일 최고기관으로 등장한 군국기무처의 직능을 리용하여 15세기부터 제정사용되여오던 품계제도를 근대적성격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였다.

군국기무처에서는 국왕에게 관리들의 품계를 새로 제정할데 대하여 제기하여 승인을 반았다

《고종실록》권32 31년 7월 2일조에는 《조정관리의 품계는 1품부터 2품까지는 정, 종의 구별이 있고 3품부터 9품까지는 정, 종의 구별이 없이 할것입니다.》라고 기록되였다.

우의 자료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군국기무처에서 제기한 관리들의 품계는 15세기 제정된 품계와 다른 양상을 가지고있다.

근대시기에 개편된 품계제도와 15세기의 품계제도를 대비해보면 그 차이를 명백히 알수 있다.

그 차이는 우선 15세기 소수 특권신분충들의 정권독점에 유리하게 편성되였던 품계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1894년 제정된 품계의 종류를 보면 신분적차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품계로 단일화하였다.

앞서 보았지만 15세기에는 신분적차이에 따라 정직계와 잡직계, 토관계로 구분하고 여기서도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 그 지위를 엄격히 하였다. 그러나 1894년에 개편된 품 계는 하나의 종류에 따라 관리들의 품계를 단일화하였다.

그 차이는 또한 품계의 등급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15세기에는 정1품부터 정9품까지 매 품마다 정, 종으로 구분되고 계 역시 두계로 구분되여 관리들의 품계가 9등 18등급으로 세분화되여 관리들의 신분적차이를 엄격히 하였다.

그러나 1894년에 개편된 품계의 등급은 11개 등급으로 간소화되였다.

그 차이는 또한 품계에 의한 관료군편성원칙에서도 나타났다.

15세기에는 정1품부터 정3품 상(통정대부)까지는 당상관으로 되여있었지만 1894년에는 1품과 2품까지 당상관급으로 규정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5세기에는 당상관급의 자리는 모두 5개 등급이였지만 1894 년에는 4개 등급으로 축소되였다. 즉 관료군편성원칙에서 차이를 가진다.

당하관도 15세기에는 매 품마다 정, 종으로 구분되여있어 정3품하(통훈대부)부터 9품까지 모두 14개 자리였다. 그러나 1894년에는 3품부터 9품까지 하나의 계로 되여있어 7개자리로 새로 제정되였다.

이것은 1894년에 개편된 품계제도가 근대적성격을 띠고 새롭게 편성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1894-1895년 품계제도개편이 근대적성격을 떠는것은 다음으로 관료임명시 국왕의 절대적권한이 약화되고 반면에 내각의 지위가 높아진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1895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봉건국가는 국가통치기구와 관리들의 관제를 근대시기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였다.

최고통치기관이였던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치고 그에 맞는 내각관제, 중추원관제, 각 부관제를 비롯한 각종 법령들을 새로 발포하였다.

당시 발포된 관제개편사업으로 하여 전제군주로서의 국왕의 지위는 차츰 약화되고 반면에 내각의 권능이 높아지게 되였다.

1895년 3월 25일 발포된 내각관제 5조는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제5조에 의하면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부서관리를 거느리고 감독하며 칙임관, 주임 관의 임명, 파면을 내각회의를 거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처리하고 판임관이 하는 마음대로 처리한다.》*라고 기록되여있다.

*《고종실록》권33 32년 3월 25일

우의 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내각총리가 해당 부서를 감독할뿐아니라 봉건국가의 관리들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칙임관과 주임관의 임명, 파면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것은 국왕의 전제권이 강하였던 15세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고있다.

15세기에는 당상관(정3품 상 통정대부이상)과 당하관 4품까지는 국왕이 직접 임명, 파면시켰으며 나머지관리들에 대해서는 당상관들의 동의수표에 의하여 그 임명과 파면이 규정되였다. 이러한 규정은 당시 국왕의 전제군주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봉건적 성격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1894년 새롭게 개편된 품계제도에 의하면 국왕의 절대적인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반면에 내각의 지위가 한층 올라갔다. 종래에는 립법, 행정, 사법권이 모두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집중되였다면 이 시기에 와서는 3권분립이 진행되여 각기 그 권한은 국왕자신이 혼자서 독판치기를 하던 15세기와는 달리 내각의 지위를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개편된 품계제도가 부르죠아적성격에 맞게 진행된 근대적개편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갑오개혁때 문관임명규정은 그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1894년 7월 14일 갑오개혁당시 문관임명규정에 의하면 칙임관(정1품-종2품)은 국왕이 직접 선발하게 되였으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과 찬성, 도헌과 함께 협의하고 공정하게 추천하여 3명의 후보자를 갖추어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서 등용하도록 하였다.

주임관의 임명도 각 아문대신이 그 후보자를 선발하여 그의 관직, 본관, 주소와 학식, 리력 등을 써서 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도찰원에 넘겨서 가부를 평가받은 다음 다시 총 리대신에게 보내면 총리대신이 왕의 의견을 받아 임명하게 하였다.

또한 판임관은 각 아문대신이 후보자를 선발하여 전고국에 보내고 그곳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대신이 추천서를 승선원에 올려 왕의 비준을 받은 다음 임명하게 하였다.

새로운 관제개편에서 칙임관의 임명과 파면은 내각회의를 거쳐 국왕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만 처리할수 있게 되였으며 판임관은 내각총리대신이 제 마음대로 처리하 도록 하였다. 결국 내각총리의 권한이 높아졌다.

15세기에는 국왕이 국가의 주요관리(4품이상)들에 한해서는 독자적으로 임면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는 국왕이 독판치기를 하던 종래와 달리 내각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치기구들이 개편되고 국가관리운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던 관리들의 품계를 제정하는데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갑오개혁때 판임관은 각 아문의 대신들과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임명하게 되여있었다.

이것은 국왕의 전제권이 강하였던 15세기보다 19세기 말엽에 와서는 왕권을 점차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관제개편사업이 진행되였다는것, 또한 총리대신의 권한 즉 내각의 권한을 한층 높이는 방향에서 개편사업이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후 품계제도에서는 여러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1895년 3월 26일 칙령 제57호 《관등급봉급령》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관등급봉급령》은 모두 18개 조항으로 되여있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관리들의 관료군편성이다.

제1조에 의하면 관등급은 칙임관은 1등부터 4등까지, 주임관은 1등부터 6등까지, 판임관은 1등부터 8등까지라고 밝혀져있다.*

* 《고종실록》 권33 32년 3월 26일

우의 조항을 놓고 1894년부르죠아개혁때 관료군편성과 대비하면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1894년부르죠아개혁시기에는 품계에 의하여 관료군이 크게 3개 관료군 즉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으로 구분되여있었으나 1895년에 와서는 관료군구성이 더욱 째여졌다. 즉한개 관료군내부에서도 칙임관은 4등급으로, 주임관은 6등급으로, 판임관은 8등급으로 편성되였다.

1894-1895년 품계제도개편이 근대적성격을 띠는것은 또한 품계에 의한 관리들의 등급과 직제, 그에 따르는 년수입의 형태가 근대시기에 맞게 화폐로 변화된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1895년 3월 새로 발포된 품계에 의한 관리들의 등급과 직제는 그에 대하여 명백히 보여준다.

당시 개편된 관리들의 관등급과 직제는 다음과 같다.

① 칙임관(정1품-종2품)의 관등급과 직제

1등에는 내각총리대신, 각 부의 대신들이 포함되였다.

2등에는 중추원의장과 부의장, 각 부 협판, 특명전권공사, 경무사들이 소속되였다.

3등에는 내각총서, 중추원 1등의관, 각 부 협판, 특명전권공사, 경무사 등이 속하였다.

4등에는 내각총서, 중추원 1등의관, 각 부 1등국장, 변리공사 등이 속하였다.

② 주임관(3-6품)의 관등급과 직제

1등에는 각 부 1등국장, 중추원 2등의관, 내각 및 각 부, 원 참서관, 내각총리대신비 서관, 시찰관, 재무관, 리사, 관세사장, 대리공사, 공사관 1등참서관, 총령사, 경무관, 관상소장, 기사 등이 속하였다.

2등에는 각 부 1-2등국장, 중추원 2등의관, 내각 및 각 부, 원 참서관,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리사, 공사관 1등참서관, 총령사 등이 속한다.

3등에는 각 부 2등국장, 중추원 2등의관, 내각 및 각 부, 원 참서관, 내각총리대신비 서관, 시찰관, 재무관, 리사, 공사관 2등참서관, 령사, 통상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 장, 기사 등이 속한다.

4등에는 내각 및 각 부 3등국장, 중추원 3등의관, 내각 및 각 부원 참서관, 내각총리 대신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리사, 공사관 2등참서관, 리사, 통상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등이 속한다.

5등에는 내각 및 각 부 3등국장, 중추원 3등의관, 내각 및 각 부 원 참서관, 내각총 리대신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리사, 공사관 3등참서관, 부령사, 통상사무관, 경무관, 번역 관, 관상소장, 기사 등이 속한다.

6등에는 중추원3등의관, 내각 및 각 부 원 참서관, 내각총리대신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리사, 공사관 3등참서관, 부령사, 통상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등이 속한다.

③ 판임관(7-9품)의 관등급과 직제

판임관 1등-8등으로 되여있는데 여기에는 각 청 주사, 각 청 서기, 공사관 서기생, 령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록사, 관세주사, 징세시장, 징세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등이 속하였다.*

*《고종실록》권33 32년 3월 26일

우의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갑오개혁때에는 관리들의 등급이 정1품부터 9품까지 되여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이후시기에는 관료군에 따라 관리들의 등급이 더 세분화되고 그에 따르는 직제에서도 변화가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1895년 3월 새로 발포된 등급에 따르는 관리들의 년수입을 통해서도 엿볼수 있다.

《고종실록》권33 32년 3월 26일조에는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 관리들의 년수입에 대하여 기록되여있다.

당시 문, 무관들의 년수입액을 도표를 통해 보기로 한다.

구분	관등급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분
문관	칙임관		총리대신 5 000 각 부 대신 4 000	3 000	1급 2 500 2급 2 200	_				
	주임관		1 600	1 400	1 200	1 000	800	600		
	판임관		500	420	360	300	240	180	150	120
무관	칙임관	본봉	2 004	1 500	1 014	1 014				
		직봉	2 972	2 500	1 092					
	주임관	본봉	756	468	552	384	288	288		
		직봉(갑)	744	648	540	372	264	216		
		직봉(을)	624	522	468	276	192	168		

문관, 무관 년봉액(단위; 원)

(《증보문헌비고》 권238 직관고 갱장관제 봉급, 《관보》 개국 504년 3월 30일, 5월 22일,

고종실록 권33 32년 3월 26일)

우의 표를 통해서 두가지 내용을 알수 있다.

그 하나는 근대시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문관들을 중시하고 무관들을 경시하는 중 문경무정책이 계속 지속되고있었다는것, 다른 하나는 관리들의 등급에 맞게 현물화폐가 아니라 근대적성격에 맞는 화폐가 규정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즉 근대시기의 요구에 맞 게 년봉의 형태가 달라진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15세기부터 실시되여오던 중문경무정책이 19세기말까지 도 그대로 지속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15세기에는 문관들을 중시하고 무관들을 경시하는 정책으로 하여 아무리 봉건국가의 관리들이라고 하여도 품계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를 두었다.

15세기 제정된 품계의 종류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문관들은 봉건국가의 주요품계 인 정직동반계를 받았으나 무관들은 그보다 지위가 떨어지는 정직서반계를 받고있었다.

정직동반계와 서반계는 다같이 봉건국가의 주요품계인 정직계에 포함되여있었지만 그 지위와 격에서는 정직동반계가 서반계보다 높았다.

례하면 정직서반계의 정3품 하인 어모장군은 정직동반계의 정5품인 리조 정랑보다 그 지위가 떨어졌다. 이것은 봉건국가가 문관들을 내세우는 중문경무정책을 실시한것과 관련되였다.

이러한 중문경무정책은 1890년대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되였다.

도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문관의 봉급이 무관보다 많았고 또 등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두고있다.

문관은 5 000원이고 무관은 2 004원으로서 절반정도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엽에도 여전히 문존무비정책이 계속 실시되고있었으며 같은 등급이라도 문관과 무관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둘째로, 문, 무관들이 받고있던 년봉의 형태가 근대시기에 와서 달라졌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표에서 본바와 같이 1895년에는 문, 무관들의 년수입의 종류가 현물화폐인 쌀과 콩이 아니라 화폐로 되였다.

례하면 1865년에 간행된 조선봉건왕조의 법전인《대전회통》호전조에 의하면 관리들

의 록봉은 정1품은 쌀 2섬 8말이였다. 그러나 1895년 근대시기에는 정1품인 총리대신은 화폐 5 000원을 받았다.

여기서 보여주는것처럼 30년이후 관리들의 년수입의 형태가 현물화폐가 아니라 화폐로 전환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1894년부르죠아개혁이후 관리들의 등급과 그에 따르는 년봉의 형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시사해주며 결국 이러한 개편사업은 품계제도의 근대적성격을 그 대로 말해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1894-1895년에 진행된 품계제도의 개편은 우리 나라 사회발 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진행된 근대적개편이였다.

실□记Ⅰ어 정직동반계, 판임관